

Issue No.  
2020-7 July 2020

# 국제 인권 동향

## Human Rights Worldwide



### OECD 국제인권경영포럼

#### OECD 국제인권경영포럼: 인권경영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와 국내연락사무소 간 협력방안 논의

2020년 OECD 국제인권경영포럼이 5월 19일과 6월 17일 각각 ‘코로나19와 인권경영,’ ‘구제절차의 이용’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5월 19일에 개최된 ‘코로나19와 인권경영’ 세션은 정부, 기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학계, 국제기구의 참가자들이 모여서 인권경영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위기대응력이 강화된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다. 6월 17일 개최된 ‘구제절차의 이용’ 세션에서는 인권경영 국내연락사무소 (National Contact Point, NCP) 제도 설립 20주년을 맞아 구제 및 책임 규명제도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국가인권기구와 국내연락사무소와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OECD는 2000년 다국적기업투자지침을 개정하면서 인권경영 부분을 전면 보강하여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연락사무소제도를 회원국마다 설치하도록 했는데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연락사무소는 현재 조정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피해를 구제하는 유일한 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국가인권기구 연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을 OECD 및 시민사회와 공유했다. 첫째로 국가인권기구가 국내연락사무소 업무와 관련하여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인권기구는 기업과 인권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진정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간접적으로 입법, 제도개선 등을 행하는 명백한 권한의 주체라는 뜻이다. 특히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시행력(enforcement power of explicit mandate)을 가지는데 주목하며, 이러한 국가인권기구의 집행력(enforcement power)은 NCP의 한계인 비강제성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구제책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로 국가인권기구의 고유한 독립성이 사용자의 자주성으로 확장될 수 있다. 사용자와 기업체의 불균형으로 인해 일부 국내연락사무소는 사용자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지위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국내연락사무소에 대하여 해당국의 국가인권기구는 능동적인 옹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노동자의 투쟁이 발생할 때 최후의 방어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연락사무소와 국가인권기구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초국적 인권침해가 특히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기구는 국내연락사무소가 대응한 다국적기업 사건의 사례를 배울 수 있다. 국내연락사무소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국가인권기구가 피해자의 진정을 받아 기업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내연락사무소가 없는 OECD 미가입국은 피해자의 사업장의 모기업 국가에 위치한 국내연락사무소의 진정처리를 감시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인권기구는 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일종의 인권전속 고발 권한(enforcement of application to court)이 있는데, NCP에서 정체되거나 큰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하여 사법부의 절차를 강제로 진행시킬 수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국내연락사무소와 국가인권기구의 협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이는 기업과 인권정책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현 시기의 필수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http://www.mneguidelines.oecd.org/global-forum> (OECD 국제인권경영포럼 모니터링 메모보고 참고)

## 유엔인권이사회 발언

### 유엔인권최고대표 유엔인권이사회 제 44차 회기 발언: 인권과 코로나19의 영향

미첼 바첼레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6월 30일 유엔인권이사회 제44차 회기에서 인권과 코로나19의 영향에 관한 세계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시하였다.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코로나19가 노인, 선주민, 아동, 이주민 등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을 포함한 각 국의 대응노력을 논의했다.

세분화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소수인종, 소수민족, 선주민들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더욱 높고 감염병의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음이 나타난다. 이는 특히 아프리카 혈통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데 이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의 불평등, 서비스의 부족,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제약, 교차적 형태의 구조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은 소위 “필수” 직종의 최전선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감염병에 대한 취약성이 심화되었다.

유엔인권최고대표는 특히 코로나19가 저임금의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과 소녀들이 겪는 배제와 차별을 심화시켰음을 지적했다. 젠더기반폭력 최근 몇 달 사이에 증가했는데,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건강, 경제참여, 동등한 권리와 관련하여 어렵게 이룩한 성취를 되돌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구금시설이 강화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비구금형과 같은 대안적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정부가 유엔의 요구에 따라 수만 명의 수용자들을 석방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하면서 자유를 박탈당한 여성과 아동들을 중점적으로 석방하고 외국인 수용자들이 영사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의료기관이 미등록이주자들의 지위와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 검사를 진행한 것을 예로 들었다. **앞으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확장시켜 나갈 것을 요청했다.**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6015>

##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 국제앰네스티, 코로나19가 의료보건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발표

2020년 7월 13일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가 전세계 의료보건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의료보건업 및 필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해서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의료보건업 및 필수산업 종사자들의 숫자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제앰네스티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세계 79개 국에서 3천명의 보건업 종사자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63개 국가 중 거의 대부분에서 의료보건인들은 개인보호장비의 부족을 호소했다. 인도나 브라질과 같이 감염병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파되지 않은 국가들도 장비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국가 중 최소 31개국에서 위험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의료보건업 및 필수산업 종사자들이 파업, 파업의 위협, 시위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많은 국가의 당국이 이에 보복을 가했다. 우려사항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의료보건업 및 필수산업 종사자들이 직업으로 인해 낙인이나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멕시코의 한 간호사는 길에서 염소수에 흠뻑 젖게 됐고, 필리핀에서는 병원직원의 얼굴에 세제를 뿌리기도 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감염병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독립적 공개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때 의료보건업 및 필수산업 종사자들의 정당하고 우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와 같은 여러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각 국은 업무관련 활동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보건업 및 필수산업 종사자들에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보건관련 우려사항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한 사례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의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20/07/health-workers-rights-covid-report>

## 해외 인권 소식

### 코스타리카 동성혼 합법화 결정의 의미

코스타리카는 5월 26일부터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이는 사회적 포용과 진보적 제도가 결합된 국가통치 모델을 채택하고 포퓰리즘 대신 법치를 선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016년 당시 루이 기에르모 솔리스 (Luis Guillermo Solís)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내각관료들의 권고를 수용하여 성소수자의 재산권, 국가서류의 트랜스젠더 성별 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미주인권재판소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와 협의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성소수자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동성결혼을 포함한 성소수자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솔리스 대통령은 법치에 기반한 사회적 포용 모델에 따라 미주인권재판소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코스타리카 헌법에 따라 국제인권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권고수용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후 코스타리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결정을 비준했다.

법치에 기반한 사회적 포용 모델은 1940년대 말에 등장했다. 이전까지 코스타리카는 민주주의 체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48년 코스타리카가 짧은 내전을 겪을 때 반군 지도자인 호세 피게레스 (Jose Figueres)는 군을 없애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재판소와 선거기관의 권한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피게레스의 모델이 민권, 법치와 함께 1949년 코스타리카 헌법에 명시되었다.

솔리스 대통령의 결정과 코스타리카 통치 모델에 대한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8년 대선의 선두주자였던 보수주의 후보가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 동성혼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결국 사회민주주의자 후보가 당선되면서 다수의 의견에 반대되더라도 법치에 따른 사회적 포용 모델이 유지될 수 있었다.

5월 26일이라는 기한이 다가오면서 보수주의 성향의 의원들이 코로나19로 구체적인 평등권 법안을 작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행일을 연기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의회는 이를 거부했고 예정대로 동성혼 합법화가 이루어졌다.

<https://www.nytimes.com/2020/06/05/opinion/international-world/same-sex-marriage-costa-rica.html>

인권위원회와 EU대표부가 오는 9월 2020년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의 이행

-일시: 2020년 9월 17일 9-18시

-장소: 웨스틴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

-주요 세션구성

세션1: 혐오표현 관련 국제인권규범 및 동향

세션2: 혐오차별 대응 관련 모범적 정책 사례와 도전 (평등법 제정 중심)

세션3: 소셜미디어, 인터넷 혐오차별 대응 방안

자세한 내용은 국제인권과 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 (김윤택 02-2125-9886)

###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김효정 hjkim5@nhrc.go.kr